

IV. 신용카드 규제

1. 우리나라

-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현재 여전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.¹⁹⁾
 - 여전법은 신용카드 시장의 진입 및 퇴출, 업무영역, 결제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.
 - 특히 여전법 제3조, 제19조, 제57조, 제70조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짐.
- 여전법 제3조와 제57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시장진입 및 퇴출에 관련된 신용카드업 허가²⁰⁾와 취소²¹⁾는 금융위원회가 결정
 - 금융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, 여전법의 특정항목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.
- 제19조와 제70조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납 거부 및 수수료 전가를 금지
 - 여전법 제19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.

19) 1987년까지는 『신용카드업법』에 의해 규제됨.

20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

21)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3항

- 신용카드업자가 제19조 1항과 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0조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.

2. 해외 주요국²²⁾

가. 미국

- 미국은 신용카드시장을 1968년 제정된 연방법인 『소비자신용보호법』 (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)으로 규제
- 『대부진실법』 (Truth in Lending Act)과 동 법의 세부내용을 정한 『Regulation Z』 에 전반적인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규제 명시
 - 신용카드 이자율, 수수료 조건, 신용조건의 주지의무, 채권압류의 제한, 소비자 신용정보의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.
 - 미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²³⁾하자 『대부진실법』 과 『Regulation Z』 의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, 거래조건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²⁴⁾
 - 『공정신용보고법』 (Fair Credit Reporting Act), 『평등신용기회법』 (Equal Credit Opportunity Act), 『전자자금이체법』 (Electronic Fund Transfer Act) 등에도 일부 신용카드 규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.
- 미국 감독당국²⁵⁾은 신용카드사의 불공정관행 개선 및 소비자

22) 김규수(2009), 진재석(2009), 최형선(2010), 한국은행(2007, 2010) 등을 참고

23) Ausubel(1991), "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credit card market", *The American Economic Review*.

24) 최희식(2004) 참고

25) 연방준비이사회(FRB: Federal Reserve Board), 저축기관감독청(OTS: Office of Thrift

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신용카드 관련 개정안을 2010년 7월부터 시행 중²⁶⁾

-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『Regulation AA』를 개정하였으며 신용카드 계좌 및 회전(revolving) 신용과 관련하여 『Regulation Z』를 개정
- 현재 소비자신용보호법은 신용카드업 영위를 위한 회사의 설립, 인가,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.
 -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에 대한 규제 조항도 따로 없으며 현금할인도 허용하고 있음.
- 그러나 신용카드업은 주(state)법에 따라 주정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.
 - 주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이용자에의 수수료 전가를 주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.
 - 뉴욕 주는 상법(General Business Law) 제518조에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 금지와 처벌규정을 명시
 - 뉴욕이외에도 캘리포니아, 텍사스, 플로리다 등 총 10개 중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를 법으로 금지

나. 호주²⁷⁾

- 호주 중앙은행은 1998년에 제정된 『지급결제시스템 규제

Supervision), 전국신용조합감독청(NCUA: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)

26) 김규수(2009)

27) 김태진(2008), 진재석(2009), 윤성훈·이경아(2009)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

법』(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)에 따라 신용카드 시장의 제반사항을 규제

- 그러나 2002년 이전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부가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산수수료를 인상하자 가맹점수수료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
- 호주 중앙은행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02년 『신용카드 지급시스템 개혁안』(Card Payment Systems Reforms)을 발표
 - 카드 지급시스템 개혁안은 ① 정산수수료(Interchange Fee) 인하, ② 카드결제 시 부가수수료(Surcharge) 고객전가 허용, ③ 카드가맹점이 모든 카드를 수용해야 하는 원칙(Honor-All-Card Rule) 폐지, ④ 다른 지급수단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(No-Steering Rule)한 조항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.

<표 8> 카드 지급시스템 개혁안 주요 내용

개혁안	주요내용			
정산수수료 인하	-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 사이의 정산수수료 상한제 도입			
	구 분	규제실시 이전	2003년	2006년
	신용카드	0.95% 수준	최고 0.55%	최고 0.5%
	직불카드	0.55% 수준	거래 건당 \$0.15	거래 건당 \$0.12
카드가맹점 규제완화	- 카드결제 시 부가수수료 카드고객에게 전가 허용 - Honor-All-Card Rule 폐지 - No-Steering Rule 폐지			

자료 : 김태진, 「호주 중앙은행의 카드산업 규제와 시사점」, 『신용카드』, 2008.

- 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가맹점수수료가 2003년 10월 1.4%에서 2007년 말에는 0.79%까지 인하되는 등 가맹점의 부담이 감소

- 이에 반해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동 개혁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유보적임.
- 2006년 신용카드 연회비는 2001년에 비해 22~77% 인상되었고 연체수수료 및 한도초과 수수료 등도 큰 폭으로 인상

다. 영국

-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『소비자신용법』 (Consumer Credit Act 1974)을 제정하여 신용카드 전반에 대한 규제를 실시
 - 동법은 신용에 대한 광고, 부당한 신용거래, 소비자신용과 관련한 신용 및 할부거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
 - 2008년 신용카드시장의 경쟁력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『소비자신용법』 개정안이 전면시행
- 영국의 신용카드업은 『통합금융업법』 (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)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없이 감독기관에 사전 신고만으로 영위 가능
 - 할인점 등 일반기업은 공정거래청(OFT: Office of Fair Trade)의 인가를 받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음.
- 영국은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에 대한 규제를 따로 명시하지 않음.
 - 4당사자체제인 영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『소비자신용법』, 『경쟁법』 (Competition Act 1998) 등을 통해 규제되고 있음.